

2020 정기총회 자료집



Conference for Citizens Life & Environment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찾 아 보 기

■ 총회 식순	-----	2
1. 감사보고	-----	3
2.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6
3. 법인 정관 개정(안)	-----	18
4.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0
5. 기타 안건(대표자 서류 변경 승인 건)	-----	39



빙설 뚫고 새 봄을 알리는 복수초

총 회 식 순

사회 : 사무처장

내 용		보고자	비 고
1.			이사장
2. 총회선언	의장		
3. 성원보고	의장	사무처장	
4. 회원의견 보고	의장	회원활동위원장	
5. 감사의견 보고	의장	감 사	
6. 2019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의장		
7.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의장	사무처장	총괄보고
8. 정관개정(안) 보고	의장	사무처장	
9.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의장	사무처장	총괄보고
10. 기타안건(대표자 서류변경 승인 건)	의장	사무처장	
11. 기타의견 청취	의장		이사장
12. 맺음말	의장		
13. 폐 회			

※. 정기총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서기는 녹음으로 대신하고 추후 회의록을 정리, 이사회회의의 확인을 거친 후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원들께 이메일로 발송한다.

I . 감사보고

감 사 보 고 서

감사일시	2020년 2월 11일 (화)
감사장소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실
감사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감사내용	사업 및 재무(회계) 부문
수 감 자	최낙선(상임이사), 임수연(사무처장) 2인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감사 이 병 백



감사 김 태 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귀중

다 음

등은 시민생활환경회의 정관 및 규약 준칙에 의하여 2019. 1. 1 ~ 2019. 12. 31일자로 종결되는 당해 법인의 2019년도 사업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를 일반적인 감사기준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기준에 따라 2020년 2월 11일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우리의 의견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였고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사업)부문

- ① 우리 단체는 회원들과 함께 꾸려가는 환경단체입니다. 회원들의 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회원들의 참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회원들과 같이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② 비누운동의 주체적 창시자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함을 탈피하여 혁신적인 환경운동으로 탈바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③ 회원활동 분야에서는 회원을 부문별, 연령별 등 회원을 분류하여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 ④ 공모 사업 분야는 기존의 공모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공모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와 마을분야의 협력방식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원 분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⑤ 2020년도에는 정관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면 개정하여 운영함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분야의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 ⑥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 재무(회계)부분

실무자들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감사보고서 권고 사항인 선 추경 후 집행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③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이전사업을 수행하신 실무자들과 임직원, 도움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 ④ 서류정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단체의 사항은 서류로 증명하기 때문에 서류정리를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결 산 액			비 고
		수 입 액(A)	지 출 액(B)	잔 액(A-B)	
법인/에코 통합	312,300,000	241,129,650	229,391,419	11,738,231	

첨부 : 법인 통장 잔액 증명서 1부 또는 법인통장 사본(2019. 12. 31 기준)

4. 의견 : 없음

법인잔액 11,738,231원은 2020년도 회계로 이월함이 타당함.

< 목록 >

연번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1	광주은행	053-127-007069	시민생활환경회의	자동이체 회원회비
2	광주은행	415-107-005269	시민생활환경회의	CMS 회원회비
3	농협	615-17-001820	시민생활환경회의	후원금 외
4	농협	355-0021-9439-13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센터
5	농협	601141-51-003911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센터
6	광주은행	055-107-023432	시민생활환경회의	비누판매(쇼핑몰)
7	광주은행	055-107-023414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8	광주은행	010-107-359847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9	광주은행	055-107-023423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10	광주은행	010-107-353735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11	광주은행	010-107-006853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12	광주은행	415-107-002793	시민생활환경회의	보조금사업

II. 2019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1 법 인 사 업

1. 총회 및 이사회

1-1.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9년 2월 27일 (수) 18:30
- 장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교육실
- 내용 : 감사보고,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 참석 : 김강열 이사장 외 60명

1-2. 이사회

제 1차 이사회	·일 시 : 2019년 3월 14일 (목) 12:20 ·장 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교육실 ·내 용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횡령/배임 건
제 2차 이사회	·일 시 : 2019년 7월 10일 (수) 11:30 ·장 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교육실 ·내 용 : 법인 사무실 이전 및 비누공장 진로 논의
제 3차 이사회	·일 시 : 2019년 9월 23일 (월) 11:30 ·장 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실 ·내 용 : 법인 사무실 이전 및 장기 차입금 승인 건
임시 이사회	·일 시 : 2019년 11월 6일 (수) 18:00 ·장 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실 ·내 용 : 후원의 밤 행사, 신임 사무처장 인선 건

제 4차 이사회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8:30 ·장 소 : 산수동 '진 숯불갈비' ·내 용 : 정기총회 준비소위 구성 및 2020년 사업 방 향 논의
-------------	---

1-3. 이사장회의 개최

제 1차 이사장회의	·일 시 : 2019년 7월 22일 (월) 17:00 ·장 소 : 시민생활환경회의 교육실 ·내 용 : 비누공장 향후 진로 문제 등 논의
---------------	---

2. 회원관련 사업

2-1. 회원현황

2018년	회원 : 1,417명 ▶ CMS 363명, 자동이체 24명, 휴면회원 1,030명	증 : 49명 감 : 125명
2019년	총 회원 : 1,432명 ▶ CMS 249명, 자동이체 6명, 휴면회원 1,177명	증 : 19명 감 : 4명

2-2. DMZ평화인간띠잇기 운동

- 일시 : 2019년 4월 27일 (토)
- 장소 : DMZ강화도
- 참석 : 회원 40여명
- 내용 : 강화도 DMZ 평화 손잡기

2-3.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평화손잡기

- 일시 : 2019년 7월 18일 (목)
- 장소 : 518민주광장
- 참석 : 회원 20여명
- 내용 : 조선대수영장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평화손잡기

3. 지구의 날 기념 광주행사

- 일시 : 2019년 4월 20일 (토)
- 장소 : 금남로 차 없는 거리 (YMCA ~ 금남로공원)
- 행사 슬로건 :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 주요내용 : 기념식, 참여부스('비우면 ○ ○ 보인다~')운영 등
- 참여인원 : 약 3,000여명
- 주최 : 2019 지구의날 기념 광주행사위원회

4. 영산강 살리기 캠페인

- 일시 : 2019년 6월 8일 (토)
- 장소 : 영산강 승촌보
- 행사 슬로건 : 영산강을 흐르게
- 주요내용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전개
- 주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5. 생활쓰레기大토론회

- 일시 : 2019년 10월 1일 (화)
- 장소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내용 : 광주형 생활쓰레기 해결을 위한 대안 만들기

6. 광주 ESD박람회

- 일시 : 2019년 10월 19일 (토)
- 장소 : 풍암생활체육공원
- 참여인원 : 약 2,000여명
- 주최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부스행사 참여 : 광주천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한 합성세제 추방, 무공해 물비누 나누기 캠페인

7. 창립 28주년 후원의 밤 행사

-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 장소 : 광주YMCA무진관
- 참여인원 : 약 150여명

8. 공모(보조금)사업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업명 : 합성세제 추방, 준비누 사용
- 사업비 : 6,600,000원(보조금 6,000,000원 / 자부담 600,000원)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환경교육 및 합성세제 추방 · 주방용 비누나누기 캠페인

2 광주에코센터 사업

1. 폐식용유(튀김기름) 재활용 순비누 제조 공급사업

- 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재활용순비누 제조 및 보급
- 폐식용유의 수거 : 학교, 단체급식장 등 약 20곳에서 약 40톤 수거
- 순비누 생산량 : 약 65톤

2. 광주에코센터 이전

	
정문	교반시설
	
세안비누 설비	물비누 숙성실

3 연 대 사 업

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월례운영위원회 참석(최낙선 상임이사)
- 기자회견 및 소속단체 행사 참여

2.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위원장 참여(최낙선 상임이사)
- 거버넌스 워크숍 참석
- '지구의 날' 행사(04. 20) 참여
-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참여
- '광주 ESD박람회' 참여

3. 장륙습지국가습지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4.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의 날' 행사 참여

5.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참여

6.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참여

7. 기타 연대활동

- 광주시 환경영향평가위원 참여(최낙선 상임이사)
-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참여(최낙선 상임이사)
- 광주시 광산구 공유촉진위원회 참여(최낙선 상임이사)
- 4대강 조사평가전문위원 참여(최낙선 상임이사)
- 광주시교육청 석면제거 모니터링 활동
- 광주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민관합동점검 활동
-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점검 활동

5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2019. 1. 1 ~ 12. 31)

1. 법인 세입·세출결산서

1-1. 법인 세입결산서

(단위 : 원)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교증감	전 년 도 결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1.			68,000,000	47,470,140	△20,529,860	57,677,475	
	1.		58,000,000	47,470,140	△10,529,860	57,677,475	
		1. 일반회비	48,000,000	46,270,140	△1,729,860	47,377,475	회원회비
		2. 기업회비	10,000,000	1,200,000	△8,800,000	10,300,000	
	2. 특별회비		10,000,000	0	△10,000,000	0	
		1. 특별회비	10,000,000	0	△10,000,000	0	
2. 센터사업 수입			130,000,000	108,547,982	△21,452,018	128,519,738	통합결산
	1. 에코센터		130,000,000	108,547,982	△21,452,018	128,519,738	
	2. 신재생에너지센터		0	0	0	0	
	3. 시민생활소비자센터		0	0	0	0	
3. 보조금			17,000,000	6,000,000	△11,000,000	6,000,000	
	1. 보조금		17,000,000	6,000,000	△11,000,000	6,000,000	
		1. 기관보조금	7,000,000	6,000,000	△1,000,000	6,000,000	광주광역시
		2. 단체보조금	0	0	0	0	
		3. 기타보조금	10,000,000	0	△10,000,000	0	
4. 후원금			90,000,000	49,100,000	△40,900,000	49,000,000	
	1. 후원금		90,000,000	49,100,000	△40,900,000	49,000,000	
		1. 일반후원금	30,000,000	15,100,000	△14,900,000	0	이사비용후원
		2. 기업후원금	60,000,000	34,000,000	△26,000,000	49,000,000	
5. 기타수입			34,824	22,746,352	22,711,528	8,401	
		1. 차입금	0	20,000,000	20,000,000	0	임대보증금
		2. 미수금	0	0	0	0	
		3. 잡수익	34,824	2,746,352	2,711,528	8,401	
6. 전년도 이월금			7,265,176	7,265,176	0	3,305,297	
총 계			312,300,000	241,129,650	△71,170,350	244,510,911	

1-2. 법인 세출결산서

(단위 : 원)

목			예 산 액	결 산 액	비교증감	전 년 도 결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1.			70,000,000	47,133,838	△22,866,162	12,873,982	
	1.		20,000,000	9,854,400	△10,145,600	12,873,982	
		1.법인사업	10,000,000	7,784,400	△2,215,600	6,600,000	보조금사업 등
		2.정책사업	2,000,000	0	△2,000,000	0	
		3.연대사업	6,000,000	2,070,000	△3,930,000	6,273,982	
		4.특별사업	2,000,000	0	△2,000,000	0	
	2.센터사업		50,000,000	37,279,438	△12,720,562	0	
		1.에코센터	50,000,000	37,279,438	△12,720,562	0	
		2.신재생에너지센터	0	0	0	0	
		3.시민생활소비자센터	0	0	0	0	
2. 경상비			240,400,000	180,357,581	△60,042,419	224,371,753	
	1.인건비		105,000,000	60,770,000	△44,230,000	101,944,823	
		1.급여	100,000,000	56,470,000	△43,530,000	96,944,823	
		2.상여금	5,000,000	4,300,000	△700,000	5,000,000	
	2.장기발전기금		10,000,000	0	△10,000,000	0	
		1.정기적금	0	0	0	0	
		2.퇴직적립금	10,000,000	0	△10,000,000	0	
	3.운영비		125,400,000	119,587,581	△5,812,419	122,426,930	
		1.미지급금	0	0	0	0	
		2.업무추진비	3,600,000	1,750,000	△1,850,000	4,800,000	
		3.퇴직금	0	0	0	0	
		4.복리후생비	16,000,000	17,789,100	1,789,100	17,504,280	
		5.여비.교통비	1,000,000	102,000	△898,000	1,024,820	
		6.통신비	4,000,000	2,306,305	△1,693,695	3,569,964	
		7.차량유지비	6,000,000	3,851,000	△2,149,000	5,656,000	
		8.도서인쇄비	500,000	2,053,000	1,553,000	375,000	
		9.소모품비	10,000,000	4,834,510	△5,165,490	6,888,321	
		10.수도광열비	9,000,000	7,042,386	△1,957,614	8,705,492	
		11.신문구독료	500,000	224,000	△276,000	364,000	
		12.경조사비	5,000,000	2,330,000	△2,670,000	8,350,000	
		13.수선비	500,000	0	△500,000	0	

	14.	3,000,000	2,856,700	△143,300	3,108,730	
	15.세금과공과	9,000,000	7,645,220	△1,354,780	8,170,280	
	16.운반비	2,000,000	1,594,170	△405,830	1,099,720	
	17.시험연구비	1,000,000	229,900	△770,100	1,210,320	
	18.임대료	7,000,000	11,241,540	△4,241,540	6,214,020	
	19.홍보비	500,000	0	△500,000	140,700	
	20.환급금	200,000	185,000	△15,000	256,040	
	21.교육비	100,000	79,000	△21,000	259,000	
	22.비품	1,000,000	390,000	△610,000	1,000,000	
	23.보험료	19,000,000	584,290	△18,415,710	18,604,690	
	24.잡비	500,000	0	△500,000	1,641,600	
	25.지급이자	2,000,000	944,771	△1,055,229	1,920,000	
	26.차입금변제	24,000,000	15,454,689	△8,545,311	21,563,953	
	27.지원금	0	16,100,000	16,100,000	0	시민생활소비자센터지원
	28.임대보증금	0	20,000,000	20,000,000	0	
3.		1,900,000	1,900,000	0	0	
	1.예비비	1,900,000	1,900,000	0	0	시민생활소비자센터지원
	총 계	312,300,000	229,391,419	△82,908,581	237,245,735	
	차기 이월금	0	11,738,231	0	7,265,176	
	누 계	312,300,000	241,129,650	△71,170,350	244,510,911	

Ⅲ. 법인 정관 개정(안)

정 관

제 정 : 1993년 11월 26일
신설 및 개정 : 1997년 2월 24일
2003년 2월 28일
2005년 2월 23일
2006년 2월 9일
2010년 2월 26일
2010년 10월 29일
2014년 2월 24일
2020년 3월 27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 적색글씨 개정(전) 정관, 청색글씨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현대 산업사회의 개발위주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이고 공동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폐자원의 재활용 사업, 환경보존사업, 시민생활환경관련 교육사업, 녹색소비자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06년 2월 9일>

제3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환경 및 시민생활 관련 및 연수사업
- ② 환경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활동
- ③ 폐자원 재활용장려 및 재활용품 개발사업
- ④ 환경문제를 통한 시민생활문화공동체사업
- ⑤ 환경보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사업
- ⑥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신설 06년 2월 9일>
- ⑦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신설 06년 2월 9일>
- ⑧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신설 06년 2월 9일>
- 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⑩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부 등을 타 지역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일반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연인
- ② 특별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
평생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하고,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연인 또는 법인 및 단체 <신설 14년 2월 24일>
- ③ 명예회원 : 법인의 발전 및 목적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① 정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며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 ② 특별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일시에 평생회비를 납부 하였거나 법인의 발전 및 목적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 ③ 준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에 참여한 개인

제6조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정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특별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모든회원)
- ②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고 피선거권(정회원)
- ③ 법인이 벌이는 각종 사업에서 얻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및 법인의 제 규정 준수
- ② 소정의 회비 납부
- ③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제9조 (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인의 탈퇴의사로 탈퇴신고가 있을 때
- ②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 ③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④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10조 (탈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무처에 통보한다.

제11조 (제명)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3인
- 3) 상임이사 1인 <개정 03년 2월 28일>
- 4) 이사(등록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 ① 이사(등록이사) 5인이상 15인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 ② 감사 2인 이내(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보고)

임원의 선임 및 보고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 ②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03년 2월 28일>
- ③ 임원이 꺾워된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임한다.
- ④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⑦ 부설기관 운영시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관련 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4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의 모든 일상적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03년 2월 28일>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임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시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시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97년 2월 24일>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

법인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 (구성 및 종류)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3)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삭제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2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개정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⑥ 법인의 해산 (신설)
- ⑦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신설)

제23조(의결제척)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의사록)

총회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구성 및 종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6조 (소집)

이사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이 10일전에 결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27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승인
- 3)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 6) 회비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 및 부의한 사항
- 8)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9)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①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9조 (이사장단회의) <본조신설 05년 2월 23일>

- 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센터별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의사록)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31조 (사무국) ≡ 사무처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3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03년 2월 28일>

제33조 (운영규정)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

법인의 재산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취득 및 보고)

재산의 취득 및 보고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 할 수 있다.

제36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7조 (세입 · 세출)

법인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세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총회의 예산승인 후 법인의 업무수행 상 여건의 현격한 변동으로 예산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1) 동일관내의 항목간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2)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결산)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0년 2월 26일>

- ①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신설 10년 2월 26일>

제40조 (회비)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임직원의 보수)

1)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05년 2월 23일>

2) 임직원의 식대에 대하여 본 회가 부담하며,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임직원의 보수를 보전하도록 한다. <개정 03년 2월 28일>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2조 (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총회에서 해산결의
 - 2) 환경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 ② 법인의 해산결의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10년 10월 29일>
- ②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지명된 이사 2인 이상이 청산인이 되어 이를 처리한다.

제45조(규칙제정) * 법인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에 관한 조문 신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Ⅳ.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법 인 사 업

■ 사업목표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참여사업 전개를 통해 회원의 자긍심 고취 및 향후 대도약의 기틀마련

■ 사업방법

휴면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관리 사업 전개, 다양한 회원참여사업 확대 및 지역별 · 소모임별 회원활동 강화

■ 사업내용

1. 총회 및 이사회 / 이사장단연석회의

1-1. 총회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일시 : 2월 말 - 장소 : 5·18 교육관 - 안건 : 감사보고 및 전 · 신년도 사업, 결산, 예산 승인	- 소요예산 : 100만원 - 재원마련 : 참석자 회비 등

1-2. 이사회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정기이사회 : 년 4회 - 임시이사회 : 2회(사안에 따라)	- 소요예산 : 180만원(30만원*6회) - 재원마련 : 참석자 회비 등

1-3. 이사장단연석회의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이사장단연석회의 : 2회(미정) - 참석대상 : 이사장단, 에코센터장, 회원활동위원장, 특별사업위원장	- 소요예산 : 60만원(30만원*2회) - 재원마련 : 참석자 회비 등

2. 회원사업

2-1. 회원확대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목표 : 회원관리를 체계화하여 휴면 회원 감소와 회원활동 활성화(2019년 말 기준 휴면회원 1,177명) - 방법 :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리 체계화, 회계 시스템 투명성 확보 1+1운동(회원배가운동)	- 소요예산 : 250만원

2-2. 회원참여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ECO투어> - 4월~11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 영산강, 동북호, 주암호, 섬진강투어 - 문화알기, 비누나누기, 정화활동 등	- 소요예산 : 1,100만원 - 재원마련 : 보조금(자부담 포함)
<마이트리 나무심기 모임> - 자기 나무를 심어 보살피기 - 장소 : 북구 장등동 시민생활 농장	- 소요예산 : 5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아나바다 모임> - 자원순환 강사, 아나바다 실천 모임	- 소요예산 : 5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송년의 밤> - 회원 송년의 밤 : 기부행사와 함께 진행, 12월 좋은날	- 소요예산 : 10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2-3. 회원활동위원회 활성화 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지역별 회원활동위원회 신설 - 회원활동위원장(1인)과 각 구별 지역위원장(5인)으로 구성 - 년 1회 이상 지역별 행사를 조직, 자체 행사 개발을 적극 유도	- 소요예산 : 20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3. 홍보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SNS 홍보 : 네이버밴드, MRM연동, 카카오톡, 페이스북 활용 - 홈페이지 활성화 - 홍보 브로셔 제작 - 시민행사, 지구의날 등에 단체 홍보	- 소요예산 : 10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4. 연대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국내연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 국제연대 : Asia생활환경회의 등	- 소요예산 : 40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5. 정책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정책토론회 등 개최 - 내용 : 시민생활, 환경, 지역현안 등	- 소요예산 : 200만원 - 재원마련 : 및 예산 편성

5. 특별사업

5-1. 도시에서 농사짓기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시기 : 4월 ~ 10월 - 대상 : 회원가족 - 도시민의 힐링 공간 - 빗물 저장시설을 활용한 도시농업 - 빗물을 활용한 텃밭 및 농장 운영 - 빗물활용 마을공동체 운동 전개 - 기후변화, 자원순환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500만원 - 재원마련 : 예산 편성

5-2. 운수천 지키기 운동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시기 : 4월 ~10월 - 대상 : 회원, 선운중학교, 러브리버 - 실태조사사업 - 운수천 지키기 위한 무공해 비누나누기 행사 - 정화활동	- 소요예산 : 300만원 - 재원마련 : 보조금

5-3. 합성세제추방, 비누사용 확대를 위한 소분사업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 : 4월 ~10월 - 대상 : 회원 및 광주시민 - 참여단체와 MOU체결 - 무공해 물비누 나눔 통 설치 - 교육 및 모니터링	- 소요예산 : 1,300만원 - 재원마련 : 보조금 및 예산편성

2 광주에코센터 사업

■ 사업목표

- 비누운동의 확산을 위한 대안 마련
- 단체의 정체성 강화와 광주에코센터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사업방법

- 집중과 선택을 통해 비누품목 단순화하여 원가절감 및 판매증대를 통한 수익증대와 지속적인 비누홍보 및 보급사업 병행
-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인력과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 받아 비누운동의 대도약 기틀 마련

■ 사업내용

1. 튀김기름 재활용사업

○ 사업목표

원가절감 및 판매증대를 통한 수익증대로 향후 안정적 운영 및 투자를 위한 재정마련

○ 사업방법 및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자원마련
<비누제품 판매> - 기름 수거 계약 시 단가 재협의를 - 생협 납품단가 재협의를 - 기관 및 단체 대상 구매 홍보 - 공장 가동률 증대	- 소요예산 : 3,000만원 - 자원마련 : 예산 편성
<비누제품 보급> - 행정 및 환경 유관단체와 함께하는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에 적극 결합, 비누 홍보 및 보급 - 환경 관련 행사 적극 참여, 비누 홍보 및 보급	- 소요예산 : 1,000만원 - 자원마련 : 예산 편성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1-1. 법인 세입예산서

(단위 : 원)

관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근거
1.			70,000,000	68,000,000	2,000,000	
	1.		60,000,000	58,000,000		
		1.일반회비	55,000,000	48,000,000		
		2.기업회비	5,000,000	10,000,000		
	2.특별회비		10,000,000	10,000,000		
		1.평생회원회비	10,000,000	10,000,000		
2. 센터사업 수입			150,000,000	130,000,000	20,000,000	
	1.에코센터		150,000,000	130,000,000		
	2.시민생활소비자센터					
	3.					
3. 보조금			70,000,000	17,000,000	53,000,000	
	1.보조금			17,000,000		
		1.기관보조금	64,000,000	7,000,000		
		2.단체보조금				
		3.기타보조금	6,000,000	10,000,000		
4. 후원금			80,000,000	90,000,000	△10,000,000	
	1.후원금		80,000,000	90,000,000		
		1.일반후원금	30,000,000	30,000,000		
		2.기업후원금	50,000,000	60,000,000		
5. 기타수입			261,769	34,824	226,945	
	1.차입금					
	2.미수금					
	3.잡수익		261,769	34,824		
총 계			370,261,769	305,034,824	65,226,945	
전년도 이월금			11,738,231	7,265,176		
누 계			382,000,000	312,300,000	69,700,000	

1-2. 법인 세출예산서

(단위 : 원)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관	항	목				
1.			98,900,000	70,000,000	28,900,000	
	1.		48,900,000	20,000,000		
		1.법인사업	21,900,000	10,000,000		
		2.정책사업	2,000,000	2,000,000		
		3.연대사업	4,000,000	6,000,000		
		4.특별사업	21,000,000	2,000,000		
	2.센터사업		50,000,000	50,000,000		
		1.에코센터	50,000,000	50,000,000		
		2.시민생활소비자센터				
		3.				
2. 경상비			279,300,000	240,400,000	38,900,000	
	1.인건비		80,400,000	105,000,000		
		1.급여	70,000,000	100,000,000		
		2.상여금	10,400,000	5,000,000		
	2.장기발전기금		10,000,000	10,000,000		
		1.정기적금				
		2.퇴직적립금	10,000,000	10,000,000		
	3.운영비		188,900,000	125,400,000		
		1.미지급금	53,800,000			
		2.업무추진비	3,000,000	3,600,000		
		3.복리후생비	20,000,000	16,000,000		
		4.여비.교통비	500,000	1,000,000		
		5.통신비	2,500,000	4,000,000		
		6.보험료	1,000,000	19,000,000		
		7.홍보비	500,000	500,000		
		8.차량유지비	4,000,000	6,000,000		
		9.도서인쇄비	2,500,000	500,000		
		10.소모품비	5,000,000	10,000,000		
		11.수도광열비	8,000,000	9,000,000		
		12.신문구독료	300,000	500,000		

	13.	3,000,000	5,000,000		
	14.수선비	1,000,000	500,000		
	15.지급수수료	3,000,000	3,000,000		
	16.세금과공과	8,000,000	9,000,000		
	17.운반비	2,000,000	2,000,000		
	18.지원금	20,400,000	16,100,000		
	19.시험연구비	1,000,000	1,000,000		
	20.기계설치비	1,000,000			
	21.교육비	200,000	100,000		
	22.임대료	26,000,000	7,000,000		
	23.환급금	200,000	200,000		
	24.비품	500,000	1,000,000		
	25.잡비	500,000	500,000		
	26.지급이자	1,000,000	2,000,000		
	27.차입금변제	20,000,000	24,000,000		
3.		3,800,000	1,900,000	1,900,000	
	1.예비비	3,800,000	1,900,000		
	총 계	382,000,000	312,300,000	69,700,000	

V. 기타 안건

1.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서류변경 건

변경 전	변경 후
김강렬 (제6대 이사장)	김형곤 (제7대 이사장)